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13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국토해양부
장

권 도 엽

●대통령령 제24307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5호 중 “제55조의4제1호”를 “제55조의4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55조의5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및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제46조제4항제3호 중 “제55조의4”를 “제55조의5”로 한다.

제50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2.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3. 제5항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제50조제8항(중전의 제7항) 중 “하되, 한 차례만”을 “하며, 한번만”으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명”을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운영”을 “구성·운영”으로, “선임 및 임기”를 “선임·해임 및 임기”로 한다.

제51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

제52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방식(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⑧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입회하에”를 “참관 하에”로 한다.

제55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를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제2항에서도 같다”로, “계약”을 “경쟁입찰”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계약과정에 입회할”을 “입찰과정을 참관할”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55조의4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 참가 제한이나 입찰 방식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제5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5(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①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을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관리주체가 위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2.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전체 임차인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임차인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하는”을 “침해하는”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57조제1항제3호의2 중 “운영”을 “구성·운영”으로, “선임 및 임기”를 “선임·해임 및 임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57조제1항제22호를 제2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23.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57조제2항 전단 중 “체결하는”을 “체결할”로,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이를”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2항에 따라”로,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하여”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로, “게시하거나”를 “공고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

제58조제4항 중 “인양기”를 “주민운동시설, 인양기”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5조의5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한 때에는 주민운동시설의 사용료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주민운동시설의 관리 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58조제9항 중 “주택관리업자”를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와 제55조의4에 따른 사업자”로,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의 내용을 말하며, 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입찰공고 내용

2. 선정결과 내용

3.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58조제10항 중 “제9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의 내용”을 “제9항 각 호에 따른 사항”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통지(관리주체가 직접 제55조의4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고, 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제9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8 중 기술능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 능력	전기분야 기술자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연료사용기기 취급 관련 기술자	열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또는 보일러기능사 1명 이상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	가스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위험물취급 관련 기술자	위험물관리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별표 12 제3호가목1)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은행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중 “이전등기”를 “이전등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2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
- 2) 장기주택저당대출(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1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에 가입한 사람

별표 12 부표 제9호의 매입금액란 중 “면허수수료”를 “면허수수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2항제5호의2, 제51조제1항제6호의2, 제52조제7항·제8항, 제55조의4제1항제4호(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부분에 한정한다), 제55조의4제3항(전자입찰방식 부분에 한정한다), 제55조의5, 제57조제1항제22호 및 제5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해임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해임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관리업자 및 용역 사업자의 입찰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제5항 및 제55조의4제3항의 입찰 제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5조의4제1항·제2항 및 제58조제9항·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리규약의 제정과 개정 시 공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자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하고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리규약 준칙 등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 후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이 영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이 영에 적합하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의 개정에 따른 행정사무 등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사업자를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고 관리규약의 제·개정 시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 입주자의 공동주택 관리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민간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근거 마련(안 제46조제2항제5호의2 및 제55조의5 신설)

주민운동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주민운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동별 대표자의 해임 사유 및 절차(안 제50조제7항 신설, 안 제57조제1항제3호)

동별 대표자 등에 대한 해임이 남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의 해임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해임 절차를 정하고,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하던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유로 명시함.

다. 주택관리업자나 용역 사업자 등의 입찰 참여제한(안 제52조제5항 및 제55조의4제3항 신설)

입주민의 주택관리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입주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이 교체를 요구한 기존 주택관리업자나 용역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 사업자 선정방식 변경(안 제52조제7항 및 제55조의4제3항 신설, 안 제58조제9항)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 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함.

마. 경쟁입찰 방법에 따른 사업자 선정(안 제55조의4제1항)

용역 및 공사 등 사업자 선정 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및 보험계약 등도 경쟁입찰을 적용하도록 함.

바. 관리규약 개정 절차 등(안 제57조제2항 및 제3항)

관리규약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의 제·개정 시 그 내용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 등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며, 개정 공고시에는 개정 목적과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을 명시하도록 함.

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대상 확대(안 별표 12 자목)

민간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도 담보제공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13년 1월 9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장 맹 형 규
(국무총리실 소관)**

●대통령령 제24308호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장”을 “관계행정기관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을 “중앙행정기관 또는”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관계행정기관장”으로, “해당 관계행정기관장”을 “해당 정책·계획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행정기관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명”을 “20명”으로, “위촉하거나”를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분석·평가”를 “분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위원회는 조사·분석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계획을”을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계획(이하 이 조에서 “조사·분석계획”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사·분석계획과 평가계획”을 “조사·분석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 및”을 “장과”로, “조사·분석계획과 평가계획”을 “조사·분석계획”으로, “위원회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를 “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위원회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를 “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조사·분석계획 및 평가계획”을 “위원회는 조사·분석계획”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위원회는 조사·분석을,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를”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사·분석 및 평가”를 “조사·분석”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연구기획 및 조사·분석 관리업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평가관리업무를 각각”을 “연구기획·조사·분석 및 평가 관리업무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연구개발인력·기자재·시설정보”를 “연구개발 인력·시설·장비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기자재·시설정보”를 “연구개발 시설·장비정보”로 한다.

제41조제6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42조제4항 중 “확충·공동활용 및”을 “확충 및 공동활용을 포함한 연구개발 시설·장비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연구기관 중에서”를 “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중에서”로 한다.

제48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